

[]공원사업시행 []허가
[]공원시설관리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자연공원의 명칭			
	공원사업의 명칭 또는 공원시설의 명칭			
	공원사업의 개요 또는 공원시설관리방법의 개요			
	공사기간 또는 관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관리 []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가. 위치도 1부 나.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서를 말합니다) 다. 공원사업시행계획서 1부 라.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설계도면(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 1부 1) 계획평면도, 2) 배치도, 3) 조경계획도, 4)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5) 도로·상하수도 및 우수관로 설계도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가. 위치도 1부 나. 공원시설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사항 증명서(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처리기관]

- 국립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도립공원: 시·도
- 군립공원: 시·군·구

※ 법 제8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처리기관이 됩니다.

